

#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7.17]  
( 제정) 2023.07.17 조례 제194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노인장애인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940-4404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"(이하 "영주귀국주민"이라 한다)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파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.
2. "사할린동포"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을 말한다.
3. "동반가족"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·홍보
  2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  3.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
  4. 의료기관,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·번역 서비스 제공
  5.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  6. 문화·체육활동 기회 제공
  7.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·문화 교육
  8.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,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
  9. 사할린 동포 생애기록사업 편찬에 관한 사업
  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각 호의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1. 「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
  2. 「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

**제6조(단체 등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포상)**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파주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3. 7. 17. 조례 제194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